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77호 (2001/5/22)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다시 보는 명작선 2001.5.18~23

2001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5.5 인권영화제

5·5 인권영화제 열심히 잘 치렀습니다
인권영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성원에 주세요

국가인권위법 제정과 인권운동의 대응1)

“허탈하지만, 핑개칠 순 없지 않은가?”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자유권위원회)

4월 30일 밤 9시를 넘긴 시각, 국회는 초등학교 학예회를 벌이듯 충실하게 자당의 방침에 따라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고, 3년을 넘게 끌어온 ‘인권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끝까지 의원들을 붙잡고 호소했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의도 한량’들은 그저 지켜온 짐 하나를 덜 듯 ‘이인기 안’을 136:137로 부결시키고, ‘정대철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을 137:3:133으로 통과시켰다.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1998년 3월 민주당이 ‘인권법’ 제정을 약속한 이래 줄곧 쟁점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가, 민간특수법인가’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단식, 무수한 항의방문과 정치인 면담, 점거와 농성을 거쳤음에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겠다는 인권활동가들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사그라들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진행된 연말연시 노천단식으로, 여야 국회의원 95명이 발의한 법안(이미경안)에 기초해 올해 1월 8일 대타협안이 나왔다.

여의도 한량들에겐 힘겨운 짐이었을 뿐

성취감은 잠시, 법무부는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반격을 개시했다. 인권과 검사 둘은 뉴질랜드와 미국 등지를 돌며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 본부에 보내고, 법무부 고위 관료들은 자료를 받은 즉시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와 7인 소위를 압박했다. 법무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원들을 가두고 집기를 부수고 여당 최고위원에게 사대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던 7인 소위안(1/16)은 ‘조폭검찰’에 밀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가 되었다. 인권단체가 3년 내내 주장해온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수용하는 대신 독소조항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사실상 인권위원회를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정대철안’이 의원총회를 통과한 2월 13일 밤,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당 민원실을 점거했다가 캄캄한 밤중에 질질 끌려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졌다. 그걸로 끝난 듯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될 때까지만 해도 법안 통과를 점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을 보낼 것 같던 국회가 바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25일이었다. 이틀새 정대철 법안을 수정한 대안이 나오고, 그동안 인권위법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법사위 회의 내내 검찰 편을 들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인권투사인양 요란을 떨었다. 이후 과정은 공대위 관계자들의 애타는 호소를 ‘패감’으로 하여 정략이 활개친 한편의 정치극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마침내 제정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를 설립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투쟁해 왔지만, 국회는 결국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권위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래 글은 사랑방 5월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 가운데, 인권위법 제정 과정과 인권단체들의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발제문 전체와 인권위법의 자세한 내용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었다. '인권위법'이 김대중 정부 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두고볼 수 없는 한나라당이 실리도 챙기면서 명분있게 반대표를 던질 기회를 찾기 위해 벌인 판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은 '장기관위의 줄' 신세가 되었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 조항' 삭제, 과태료 부과주체(인권위원장) 등 독립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면전에서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권, 실지 조사권, 조사시 전문가 동반권, 출석요구권 등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선 상당한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 광범한 진정각하 조항, 타 구제조치가 개시될 경우 진정이송조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요건, 서면조사 우선주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및 위증죄 삭제 등.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나아가 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국가권력기관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권침해 조사 실효성 확보 못해

이 법은 우리가 바라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어느 부분을 취하여 몇 점을 매길 사안이 아니다. 낙제점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낙제점이라는 것과 이 법이 공포되어 현실로 맞닥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글머리에서도 말했듯 인권활동가들이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법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누더기라면 이 법 제정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인권단체들의 지금 모습이 누더기일 수 있는 것이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오늘 한국의 인권상황, 인권운동, 인권활동가의 현주소를 나타낸다. 치열하게 싸운 만큼 허탈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탈하다고 하여 모든 것을 외면하고 다 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는 마음에 드는 법안을 따낸 적이 있었으며, 속시원한 성과를 낸 싸움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법안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인권운동의 현재를 냉정히 돌아보고 그 지점에서 시작하기 위함이지, 무얼 버리고 무얼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을 이 꼴로 만든 김대중 정부를 규탄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이 법안 탄생에 있어 인권단체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벌인 일을 자신이 감당하며 견디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여기 있는 우리들 외에 누가 한국인권운동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법안이 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싸움이 이어진다. 손을 놓고 있으면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회에 반동적 판결을 일삼던 대법관 출신들이 들어설 수도 있다. 한나라당 몫으로 내정된 상임위원과 그 주위에 모인 일당들이 옷로비 사건처럼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특별검사 역할을 도맡아 내년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회는 끝장이다. 이 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다수인 보호시설 규정, 위원회 조직 구성, 시설수용자 진정 절차와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절차 등으로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비록 미숙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일차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위원회를 잘 구성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것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결국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설 체력이 있으면, 넘치는 힘을 자신이 다룰 사안을 확장하는 데로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상황 심사 및 평가

'경제 우선주의', 사회권실현의 장애

- 제네바 유엔사회권위원회 회의 참가 후기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회권위원회)

4월 21일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에선 기내식도 마다할 정도로 내내 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연이어 밤을 새느라 부족했던 잠을 보충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별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지리를 잃거나, 갈 집이 없거나, 자식 교육 걱정, 병원비 걱정 등으로 당장 하루하루가 지나간 싸움의 연속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보고서 활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을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이긴 하지만,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 기구인데 우리 사회권 상황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 운운하며 정부에 면죄부나 주는 것 아닐까? 회의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17개 단체의 손을 거쳐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장애인, 난민,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까지 우리의 상황을 사회권이란 렌즈를 통해 진단한 원고들이 하나씩 모여면서 회의감은 점차 없어졌습니다. IMF 구조조정을 경험한 우리의 사회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보고서로서의 가치, 활동에 참여한 인권 의식의 확산 등이 기대감의 결들을 이뤘습니다.

꼬리 물던 회의감이 기대감으로

민간단체들의 발표가 예정된 4월 23일 오후, 유엔인권센터의 회의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민간단체 활동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심사대상국들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온두라스에서 온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의 일원인 박경신 변호사는 경찰에 맞아 쓰러진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와 사진을 동원한 발표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동안의 발표만으로 사회권위원들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리라 기대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사가 시작되는 4월 30일/5월 1일까지 남은 1주일 동안, 우리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의장 주변의 식당에 앉아 담배를 즐기곤 하던 프랑스 출신의 펙시에는 노동권 전문가입니다. 점점 심화되는 소득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율, 노동기본권이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노조 활동에 가해지는 형사탄압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을 들던 펙시에는 본 심사 회의 때 본질을 꿰뚫는 질문과 의견 표명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분야의 전문가인 에파도르 출신의 로메로도 기억에 남습니다. 로메로는 국가보안법이란 칼날이 문화활동을 제약한 사례들, 태백산맥, 레드헌트, 모내기

등에 놀라며 심사 과정에서 꼭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밖에도 폴 헛트, 말린베르니, 필레, 리델, 아메드, 사디 등 많은 위원들이 매우 진지한 태도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아가 사회권 전문가들답게 사회권 규약에 대한 가입국의 의무,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하는 구조조정과 사회권의 충돌 등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맞이한 4월 30일과 5월 1일의 한국 심사 회의, 위원들은 매우 광범한 분야의 권리들에 대해 혹시 권리가 법 제도적으로 보장되는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정부가 모든 의무를 다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한 정보가 유용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들은 '경쟁력 확보의 필요', '특수한 안보 상황' 등을 강조하며 사회권 보장의 의무를 회피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나 인권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와 다르게 정부가 하는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제네바에서 진행된 한국 사회권에 대한 진단 결과는 5월 11일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란 문서로 나왔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길게는 1년 동안 짧게는 13일 간 제네바에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사회권의 보편화를 위하여...

최종견해는 95년 1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서입니다. 최종견해는 긍정적인 측면, 사회권 실현의 장애요소, 주요 우려사항, 제안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우리 정부가 줄곧 취해온 경제 우선주의를 사회권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려사항의 첫째로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고 있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로 나타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흔히 자유권만의 문제로 여겨지는 국가보안법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사회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적는데 반해 방위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13개 항의 제안 및 권고를 제시했는데,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채택한 최종견해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우리 상황에 매우 적절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가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과 제안 및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근거로 사회권이 보다 보편화하도록 투쟁하고 정부가 사회권 보장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난 1년 간의 보고서 작업보다 더 힘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그냥 몇 장의 문서에 그칠 것입니다. 이번 '최종견해'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의 꽃을 틔우는데 퇴비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 우려사항, 제안 및 권고

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제안과 권고(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 경제희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여성 차별 및 성희롱, 여성과 남성 간 큰 임금 차) · 비정규노동자(높은 비율, 고용 불안, 임금/사회보장 차별) · 증가하는 산업재해율(산업안전규제완화와 근로감독관의 수 부족이 그 원인인 듯) ·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 파업을 범죄시하는 문제, 대량해고로 유발된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 사용 ·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아동학대 · 개발의 집중에 따른 도/농 간 인구 불균등 문제 ·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엄격한 수급기준과 생계급여액의 적절성,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 장애인 2% 고용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 강제철거에 대한 정보 결여, 민간개발 시 강제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결여,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 낮은 보건의료예산, 압도적인 수의 민간의료기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 열악한 공교육, 사교육비 · 압도적인 수의 사립대학,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 · 초등교육만 무상의무교육인 문제 ·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심사 기준 · 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 결여 문제 ·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활동 제약	· 최초 보고서 심의(1995년) 후 최종 견해에 담겼던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 규약의 관점에서 통계 수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국가인권위 : 파리원칙 부합, 일반논평 10 ·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 · 여성부에 적절한 예산 배정 ·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 재검토, 규약 상의 제 권리 보장 ·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 공권력 사용 자제,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 피해자들의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 확대 · 주거권에 관해 정부 내 전담 부서 설치, 민간개발에 의한 강제철거민들에게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 보호 제공, 취약집단의 적절한 주거 이용 보장 · 공교육 강화 계획 수립(중등교육의 무상의무화를 위한 기한 설정, 공교육의 기능과 질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 모든 단계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인권교육과 연관 모든 교육단계 교과내용 재평가) ·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 수행 ·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 준비 · 3차 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조건과 농업 및 식량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담을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의미하는 것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자유권위원회)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아래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정보통신부는 본법에서 삭제된 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에 넣으려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64개 사회단체의 집중포화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가, 5월에는 보다 교묘한 조항으로 바꾸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전 시행령(안) 23조 2항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나, 개정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말이 본법에서 삭제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구현할 핵심 수단인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분명 의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여전히 내용등급제를 관철할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위임한 점도 "내용등급제를 관철할 우회로를 뚫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도대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뭐길래 정보통신부가 이처럼 온갖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관철하려 하며, 시민·사회 단체는 왜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내용을 등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파일 등 모든 내용물들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등급제의 핵심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다수나 주류나 하는 세력의 폭력인 것입니다.

등급을 왜 매길까요? 정부 설명대로라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물은 청소년이 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2세 미만 아동이 보아도 좋은 것은 1등급으로 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이 보아도 좋은 것은 2등급...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딱지를 붙인 뒤 이를 인식하고 차단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정부가 공공도서관, 학교, PC방 등에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무한대에 달하는 인터넷 내용물에 무슨 수로 등급을 다 매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대로 있다고 해도 어려운 데, 매일 수없이 올라오는 내용물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등급 바깥에 존재하는 국외 사이트는? ...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통신부가 왜 이처럼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요? 처음에는 미심쩍었던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강제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검열하고 통제할 '형사처벌 수단을 갖겠다'는 것.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채찍을 쥐고 싶은 것입니다. 청소년-성인이라는 작위적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성인들을 욕박지르며 결국 인터넷을 제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것, 이것이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체입니다.

감옥의 인권

교도관 폭력에 면죄부

96년 마산교도소 수감당시 교도관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김석진씨의 소송투쟁이 지난 8일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98년 출소후 가해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과 여광석 소장 등을 고소했으나 유일하게 인정된 것은 김광노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방해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무혐의처리했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김광노 교도관의 성실성을 이유로 소추유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이 진행된 민사소송은 별 진전없이 2년여를 보내다 재정신청 결과에 따라 김광노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방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로 당분간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재소자 재판권 방해행위가 함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겠죠.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데다 무엇보다도 법원이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자체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악명 높았던 교도관들의 폭력은 독립적이라는 사법부에 의해 지금껏 단 한번도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교도소가 수상합니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인권유린이 잦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중인 윤아무개씨는 지난 1월 광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소장에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습니다.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히자 장흥석 관구계장은 협소정과 수감까지 채운 채 그를 징벌방에 가둔 후 고소철회를 약속한 이후에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후 20여 일만에 이씨는 타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또, 김아무개씨는 고소장 제출을 위해 광주교도소측과 한달동안을 싸워야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소내에서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당시 감독교도관이 말리지도 않고 방관했다고 합니다. 감독교도관을 고소하려했으나 담당교도관들은 고소장 제출을 막았습니다. 또 교도소측은 김씨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려 하자 편지 역시 8통이나 불허하고 가족들에겐 이감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김석진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야 김씨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랑방이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재소자 청원접수증 발부 의무화 요구

인권운동사랑방은 재소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가 청원접수증 발부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청원서를 제출하고도 청원이 접수됐는지 중간에 폐기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몇 개월이고 법무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측에서 접수증을 발부하면 간단한 일인데도 법무부는 청원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자유권위원회 감옥인권팀)

사/업/보/고

(2001년 4월 넷째 주- 5월 셋째 주)

인권영화제

'5·5인권영화제'가 5월 18일부터 6일간 서울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잠시 쉬어간 '5·5 인권영화제'는 '다시보는 명작선'이라는 이름 아래 19개의 기상영 작품을 다시 선보였고, '이슈포커스' 코너를 통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5월 23일 폐막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른 영화제 팀은 이제 후속작업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내년 봄에 찾아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 홈페이지 새단장 예정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초기화면에서 '국제인권조약 꾸러미'가 보강됩니다. 지금은 6개 국제인권조약만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유엔이 채택한 아동관련 주요 선택의정서와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협약이 추가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언어별로 분류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언어의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주제에 한글, 영문 자료를 모두 넣어놓

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원하시는 언어의 자료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단장은 5월말까지 마무리되고 6월이면 새로운 얼굴의 자료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문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실

■ 인권교육실 사이트 새단장

사랑방 홈페이지 정비에 발맞춰 교육실 페이지도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희망하셨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짹짹~) 교육실 교재개발팀에서 논의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매주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된 것이지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사랑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목은소식'을 지우고 진짜 '새소식'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쯤만 부지런해지자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권리 찾기'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youth>)도 확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 군데 수선(?)을 해야 하지만, 진행중인 교칙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우선 문을 열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 아이들의 권리 찾기 홈페이지 작업엔 '꿈꾸는 사람들'의 전영민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방/동/정

■ 사랑방 손배소송 승리 ■

5월 11일 사랑방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최은아, 기명문, 심태섭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2시간 가량 경찰방패에 둘러싸여 노상감금을 당했습니다. '소파협상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려 했으나 시위 예정지엔 온통 경찰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집회가 무산된 것으로 여기고 길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에워쌌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심검문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았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방 활동가들을 노상감금했습니다. 2시간 여의 노상감금(너무 추웠습니다)에서 풀려난 활동가들은 그날 저녁 바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상희 변호사께서 소송대리인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인권활동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배상금은 항소심이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청구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활동가들은 배상금 전액을 사랑방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랑방은 해당 경찰 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도 할 계획입니

다.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 버마 활동가와 다진 연대 ■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외교담당관 로딩 씨가 5월 초 방한하여 NLD한국지부 활동가들과 함께 사랑방을 방문했습니다. "전 국민이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다"는 말로 버마민중들의 고통스런 삶을 표현한 로딩 씨는 버마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한국민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아웅산 수지 여사와 친분 관계를 공공연히 표현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실천으로 옮긴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한 깊은 실망을 표현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버마 진출과 투자가 군부를 살찌우고 군부의 생명력을 지속시켜줄 뿐 버마 민중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버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NLD지부 중 한국지부만이 유일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사랑방 활동가들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최소한 한국정부가 NLD 한국지부 활동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일부터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은 "힘있게 계속 전진하십시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 호주대사관 1등 서기관 방문 ■

5월 17일 호주대사관의 린다 트리그 1등 서기관이 방문하여 국가인권위법에 대한 사랑방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민간단체들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으나,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깊은 공감과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사랑방은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해 적극대응할 태세를 준비중입니다.

2001년 4월 회계 보고

(2001년 4월 17일 - 5월 16일)

이월금 : 70,749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4,737,880원	사업비	1,072,910원
-하루소식	3,302,140원	-하루소식 발송	83,640원
구독료(141명)	2,857,940	-하루소식 우편복사	152,670원
기사배급	444,200	-자료제본 및 구입	148,380원
-간행물 판매	188,000원	-시평필진 사례	66,000원
국제인권조약집	7권	-자유권위(감옥사업)	240,150원
인권교육길잡이	1권	-사람사랑 제작 및 발송	111,240원
인간단계 살권리	1권	-월례포럼 행사비	36,500원
하루소식 합본호	4권	-연대사업 분담금	225,000원
한국감옥의 현실	1권	-기타사업비	19,330원
아이들의 인권	1권		
불심검문자료집	2권	활동비	4,900,000원
-자료제공비	86,240원	사무실유지비	936,280원
-강연료	1,161,500원	통신비	1,180,430원
후원금	4,189,900원	사무비품	208,900원
-정기후원(167)	3,916,790원	사무국 식비	404,480원
-특별후원	273,110원	생활비	220,060원
상임활동가 기여금	810,000원	부채상환	800,000원
기타(은행이자)	908원		
총수입:	9,738,688원	총지출:	9,733,060원
잔액:			76,377원
부채:			700,000원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 이월 : 3,680,810
- 지출('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137,140원
- 잔액 : 3,543,670

〈2001년 4월 재정 세부사항〉

- 사업수익이 전월에 비해 2백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밀린 하루소식 구독료를 한꺼번에 입금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한국언론재단이 진행한 기자연수프로그램에 사무국의 각 사업단위가 대거 강연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참석해 '강연료' 수익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 멀리 재미한국청년연합 사무국과 제네바에 있는 팍스로마나의 사무국장 이성훈씨, 사랑방을 탐방했던 서울 중앙고 NGO반 학생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98년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및 연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대생 임현규 씨등 11명이 승소금 가운데 3백만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사랑방의 낡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교체와 사무비품 마련에 쓸 예정이며, 이번 달 회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이 달엔 연대사업 분담금이 대거 지출되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파견철폐공동대책위원회, 사회권연대회의, 대우자동차인권유린 규탄 인권단체 공동집회, 민족민주열사추모제 등에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 하루소식의 인권이야기를 맡아주신 필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4월 후원금 남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5/16일까지)

